

드래프트 세칙

제1조(대상)

구단으로의 첫 입단과 등록을 희망하는 자로서 드래프트 참가 신청을 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1. 여자는 고졸 및 대졸 예정자 이상 또는 중, 고교 재학 중이 아닌 만17세 이상 자로 한다. 단, 당해연도 대학 중퇴자는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없다.
2. 남자는 대졸예정자 또는 각급 학교 재학중이 아닌 만21세 이상 자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 대학 중퇴자는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없다.
3. 단, 군경팀에 먼저 등록하여 리그에 참가한 이력이 있는 선수의 경우, 반드시 드래프트를 통해 구단으로의 입단과 등록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계약금, 기본급연액)

① 지명순위별 계약기간, 계약금, 기본급연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라운드	지명순위	계약기간	계약금	기본급연액 (세금포함)
여자	1	1~4순위	1~5년	7,000만원	2,400만원 이상
		5~8순위		5,000만원	
	2	1~4순위		3,000만원	
		5~8순위		2,000만원	
	3	1~8순위		1,000만원	
	4~6			미지급	
남자	1	1~3순위	1~5년	7,000만원	2,700만원 이상
		4~5순위		5,000만원	
	2	1~3순위		3,000만원	
		4~5순위		2,000만원	
	3	1~5순위		1,000만원	
	4~6			미지급	

② 연봉은 기본급연액과 수당(출전급, 승리급, 출전승리급)은 매년 또는 다년계약이 가능하며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③ 최초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 동안 매년 기본급연액을 조정 할 수 있다. 조정금액은 전년도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계약금은 5년의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1. 구단과 지명선수 간 첫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첫 계약기간 동안 전액 지급한다.

2. 구단과 지명선수 간 첫 계약기간이 2년 이하일 경우, 최대 2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두 번째 계약까지는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3. 계약금은 제1항의 금액을 초과 지급할 수 없으며, 기타 수당은 자유롭게 지급 가능하다.
4. 계약기간이 남은 선수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금 중 총 계약기간 대비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선발방식)

- ① 드래프트 일자는 매년 연맹이 정해 공지한다.
- ② 드래프트 지명순서는 확률제 방식으로 하며, 전 시즌 정규리그 최종 순위를 기준으로 한다.

1. 순위 및 확률

여	순위	8	7	6	5	4	3	2	1
	확률	22	20	17	14	11	8	5	3
남	순위	-	-	6	5	4	3	2	1
	확률	-	-	30	24	19	14	9	4

2. 상기 1호에 따라 추첨을 실시하여 1라운드 지명순서를 정한다. 2라운드는 1라운드 지명순서의 역순으로 실시한다. 단, 신생구단이 창단될 시, 추첨 확률은 별지1을 따른다.
3. 3라운드는 상기1호에 따라 추첨을 실시하여 지명순서를 정하고, 4라운드는 3라운드 지명순서의 역순으로 한다.
4. 5라운드는 상기1호에 따라 추첨을 실시하여 지명순서를 정하고, 6라운드는 5라운드 지명순서의 역순으로 한다.
5. 추첨 공의 색상은 전 시즌 정규리그 최종 순위 순서대로 선택한다.
- ③ 전 시즌 불참 구단에는 가장 낮은 확률을 부여한다.
- ④ 제4조 1항을 위반하는 구단은 차기 드래프트에서 최하의 확률을 부여한다. 상기 3항의 구단보다는 상위 확률을 갖는다.
- ⑤ 상기 3항 또는 4항에 해당하는 구단이 각각 복수일 경우, 전 시즌 정규리그 최종순위에 따라 확률을 부여한다.
- ⑥ 신생구단에는 첫 번째 참가 드래프트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추첨 확률을 부여한다.
 - 남자부 : 제2항 1호에서 정하는 최고 확률 부여
 - 여자부 : 제2항 1호에서 정하는 최저 확률 부여

제4조(지명)

- ① 구단은 매년 드래프트를 통해 2명 이상의 선수를 지명하여야 한다. 위반한 구단에는 규약과 세칙에서 정하는 제재를 부과한다. 단, 1라운드에서 지명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어느 라운드에서든지 지명을 포기하는 구단은 다음 라운드 최하순위로 지명권을 행사한다.
- ③ 라운드별 지명 포기 구단이 발생할 경우, 해당 라운드 지명 순서에 따라 타 구단이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6라운드 지명 종료 후 희망하는 구단에 한하여 번외 지명이 가능하다.
 - 1. 전 구단이 희망할 경우, 상기 3항 2호에 따라 지명순서를 정한다.
 - 2. 일부 구단이 희망할 경우, 별도의 추첨을 통해 순서를 정하고 지명한다. 추첨 방식은 희망구단들의 동의를 얻어 연맹이 정한다.
 - 3. 상기 1~2호에 해당하는 선수의 계약조건은 6라운드 지명선수와 동일하다.
- ⑤ 드래프트 종료 후 추가 지명을 할 수 있다. 추가지명 기간은 아래의 기간을 따른다.
 - 1. 시즌 중 : 한국핸드볼연맹 규약 제13조(선수 등록)에 의거하여 추가등록기간까지 추가지명이 가능하며, 계약조건은 드래프트 세칙 제2조(계약기간 및 계약금, 기본급연액)에 의거하여 6라운드 지명선수와 동일하다.
 - 2. 시즌 종료 후 : 시즌 종료 후 추가지명을 통한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조건은 드래프트 세칙 제2조(계약기간 및 계약금, 기본급연액)에 의거하여 6라운드 지명선수와 동일하다.
- ⑥ 신생구단은 2년간 드래프트 지명에 앞서 1명에 대해 우선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선지명 선수의 계약조건은 1라운드 1순위에 해당한다. 단, 리그에 참가하는 시즌부터 행사할 수 있다.

제5조(육성지원금)

- ① 구단은 신인선수를 육성한 출신학교에 육성지원금을 지급한다. 다음연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육성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지원금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현물로 대체는 불가하다.
 - 1. 계약금 5,000만원 이상 - 계약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 2. 계약금 2,000만원 이상 - 계약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3. 계약금 2,000만원 미만 -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③ 출신학교별 지원금 비율은 다음과 같다. 출신학교 중 해당 선수가 등록된 적이 없거나 드래프트 시점에 핸드볼팀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을 최종 출신학교에 지급한다.

출신학교	지원 비율	
초등학교	10%	20%
중학교	15%	30%
고등학교	25%	50%
대학교	50%	-

④ 신인선수의 출신학교가 모두 핸드볼팀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구단은 육성지원금을 연맹에 납부하며 연맹은 유소년발전기금으로만 이를 집행한다.

제6조(기타)

① 최초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 동안 매년 기본급연액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정금액은 전년도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계약기간을 포함한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기간 및 연봉은 선수와 구단 간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계약과 관련하여 규약 및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 별도의 지원(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모든 것)이나 이면계약은 금지한다.

③ 본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동의를 거쳐 시행한다.

별지1.

여	순위	9	8	7	6	5	4	3	2	1
	확률	22	19	16	13	10	8	6	4	2
남	순위	-	-	7	6	5	4	3	2	1
	확률	-	-	27	22	18	14	10	6	3